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3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워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 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 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 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현행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79퍼센트"를 "69퍼센트"로, "21퍼센트"를 "31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	관한 특례) ①
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	
세를 더한 세액의 <u>79퍼센트</u> 를	<u>6</u> 9퍼 센트
부가가치세로, <u>21퍼센트</u> 를 지방	<u>31퍼센트</u>
소비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